
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6. 9.

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
(재정건설위원회)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26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		
제출자	서초구청장(기획예산과)	제출연월일	2026. 8. 21.
위원회	재정건설위원회	전문위원	김민희

I. 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편성

3.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5년도말 조성액 [㉠]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말 조성액 [㉡] = [㉠] + [㉢]	비고
		수입 [㉢]	지출 [㉣]	증감 [㉤] = [㉢] - [㉣]		
옥외광고발전기금	2,279,638	830,950	1,118,015	△287,065	1,992,573	도시계획과

II. 검토사항

1. 법적근거 및 절차

○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
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

○ 기금재원조성 및 관리 관련 조례

1) 옥외광고발전기금
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⇒ 제3조(기금의 용도), 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

2. 자금운용계획변경(안)

1) 옥외광고발전기금(도시계획과)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수 입 액	기 정 액	증 감	항 목	지 출 액	기 정 액	증 감
합 계	3,110,588	2,752,901	357,687	합 계	3,110,588	2,752,901	357,687
예치금주회	2,279,638	1,999,951	279,687	비용자성비사업	1,117,615	939,615	178,000
이자수입	55,349	55,349	0	예치금	1,992,573	1,812,886	179,687
기타수입	775,601	697,601	78,000	기타지출	400	400	0

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배경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책사업 중 “광고물 개선 사업”의 기정지출액 507,295천원 대비 변경지출액은 685,295천원으로 35.09%가 증가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② 수입계획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·운용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,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의 수입액은 기정액 2,752,901천원 대비 357,687천원이 증액된 3,110,588천원임.
-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함에 따라 279,687천원이 증가한 것임.
- 또한 세외수입 78,000천원이 증가하였는데, 이는 2025년부터 간판개선사업 추진 구간인 양재 말죽거리 일대의 노후 공공 옥외광고물 등을 개선하기 위해,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한 『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』(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-1869호, 2026.2.5. / 한국지방공제회 경관개선부-110호, 2026.2.5.) 지자체 공모에 선정되어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임.
- 지원금은 현재 지자체 선정 결과 통보(한국지방공제회 경관개선부-377, 2026.4.7.)를 거쳐 사업비 편성 및 예산 확보를 요청받은 상태(한국지방공제회 경관개선부-1058, 2026.7.15.)이며, 향후

예산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부받을 예정입니다.

③ 지출계획

-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의 지출액을 살펴보면 시설비 178,000천원 이 신규로 편성되었음.
- 이는 상기 언급한 『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본 사업은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의 노후 옥외광고물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19개 지자체의 공공 옥외광고물 및 부대시설 이 개선되었으며,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.
- 특히 2025년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'양재 말죽거리' 일대는 복지관, 서초구 보건소, 서초구청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으나, 다수의 공공 옥외광고물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간판개선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는 2026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임.

<사업개요>

- 사업기간 : 2026. 4. ~ 12.
- 사업대상 : 서초구청, 서초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
(현장여건 등에 따라 사업대상 변경 가능)
- 사업규모 : 총 18개 옥외광고물 및 부대시설
(서초구청, 서초구보건소, 양재1동 민원분소,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등)
- 사업내용 : 양재 말죽거리 일대 공공 옥외광고물 및 부대시설 개선
- 사업예산 : 200백만원(한국지방공제회 100백만원 + 구비 100백만원)

- 사업예산은 총 200,000천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00,000천원과 구비 100,000천원이 투입되는 매칭사업임.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, 공제회 예산 100,000천원 중 디자인 및 실시설계비 22,000천원은 공제회가 직접 지출하며, 서초구에 지원되는 78,000천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고, 구비 분담금 100,000천원은 지출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시설비 지출액은 총 178,000천원임.

Ⅲ. 참고자료

< 관계법령 >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 -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 - 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- 제3조(기금의 용도)
 - 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

관 계 법 령

◆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◆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◆ 「서울특별시 서소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 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6. 불법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

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운용 관리) ①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